

대전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2014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나20015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201413 판결

전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로

담당변호사 김상원

변론종결 2023. 11. 14.

판결선고 2023. 12. 12.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22. 1. 11. 접수 제9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1. 9.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분하고 ‘D’이라 한다)와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이자율 연 2.86%(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달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나. D의 대표이사이던 B은 2017. 11. 9. D의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1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했다.

다. D은 2021. 11. 12.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2022. 5. 13. D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처리하였다. 2023. 1. 5. 기준 D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은 116,486,825원이다.

라. B은 2007. 2.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8.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은 2022. 1. 10. 동생인 피고에게 3,45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1.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22. 1. 20.경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는 6,512만 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683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2. 5. 13. D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처리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보증금채권도 그 무렵 발생하였다. 그리고 위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2. 1. 10. 이후이긴 하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 2021. 10. 9.라고 주장하나, 2022. 1. 10.자 매매계약서가 처분문서로 존재하고 이를 전제로 등기까지 이루어졌다.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처분문서 내용을 뒤집고 매매계약 체결일을 다르게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런데 위 보증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근보증약정은 그 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D이 2021. 11. 12.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기 시작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기한이익을 상실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2022. 5. 13. 기한이익상실 처리되어 B에 대한 보증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보증금 채권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무자인 B이 2022. 1.경 적극재산이 약 5억 원, 소극재산이 약 9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그리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 정도 가격에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꾼 다음, 자신과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D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로 인해 B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는 데 부족이 초래되었고, 이는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B이 자신의 유일한 수입원인 D을 회생시켜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D의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연대보증인 본인의 자력과 채권채무관계만이 문제되는데, B은 본인의 적극재산으로 자신의 채무가 아닌 타인(D)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소극재산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적극재산이 줄어들면서 소극재산도 함께 줄어들어 전체 재산에 변동이 없게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D의 기존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B의 자력 회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해당 특정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D의 사업정상화 및 B의 자력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변제를 통해 D의 사업이 일시적으로나마 정상화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3) 결국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돈을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본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앞에서 본 것처럼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었는데 자신을 포함한 형제들이 각 1/4 지분씩 B에게 명의신탁 했었으므로 B의 소유인 1/4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갑 제7호증)에 B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전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B과 그 형제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22. 1. 11. 접수 제9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별지

- -

충청남도 공주시 E 대 814㎡. 끝.

